

##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2013.9.3.

노무법인두레

### 1. 개정취지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범위가 주로 제조업·건설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조문별로 제도취지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 2. 주요 개정 내용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범위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 될	업종별로 적용되는 규정을 나열함 (시행령 별표1)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나열함 (시행령 별표1)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직무책임 강화 -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관계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함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
	<p>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p>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p>안전·보건 관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확대</p>	<p>시행령 제9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p>	<p>시행령 제9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p> <p>-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추가함</p>
	<p>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p>	<p>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p> <p>-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기존의 규정에서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등을 추가함.</p>
	<p>시행령 별표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p>	<p>시행령 별표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p> <p>-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기존의 규정에서 공사금액이 800억 이상인 건설업 또는 상시 근로자수 600명 이상인 건설업을 추가함.</p>
	<p>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p>	<p>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p> <p>- 기존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규정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임.</p>

### 3.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의무

규 정	내 용	처벌규정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제10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 사업주는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중대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진단결과에 관한 사항 등.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제12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0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진단 (제43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4. 향후 대응방안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적용받는 규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00인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의 적용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